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408호

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3호(2016.1.14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15일

서울특별시

1. 계획취지

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내 서울역파출소 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(변경) 사항임

2.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(경미한 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연번	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1	변경	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	중구 봉래동~ 용산구 한강로 일대	3,436,880	감) 293.49	3,436,586.51	
2	변경	서울역 특별계획구역	중구 봉래동 2가 122 및 용산구 동자동 43-205 일원	235,000	감) 293.49	234,706.51	

나. 변경사유

- 서울역광장~고가 연결시설물(승강기, 계단) 설치 및 서울역파출소 신축 등 (구)서울역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'16.10.12) 사항 이행을 위해 서울역파출소 신축대지에 대해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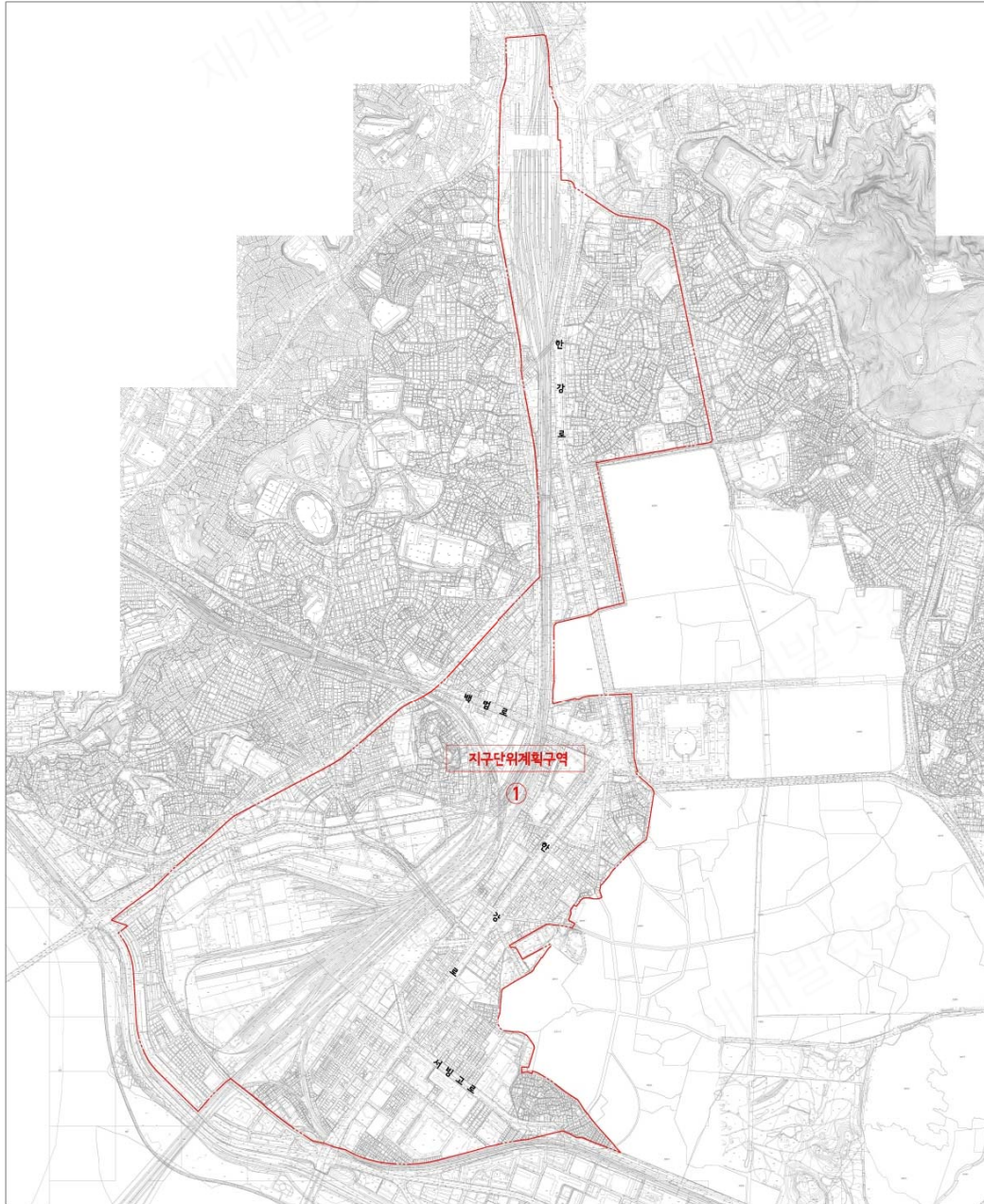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2133-8326)에 비치하고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)



용산 지구단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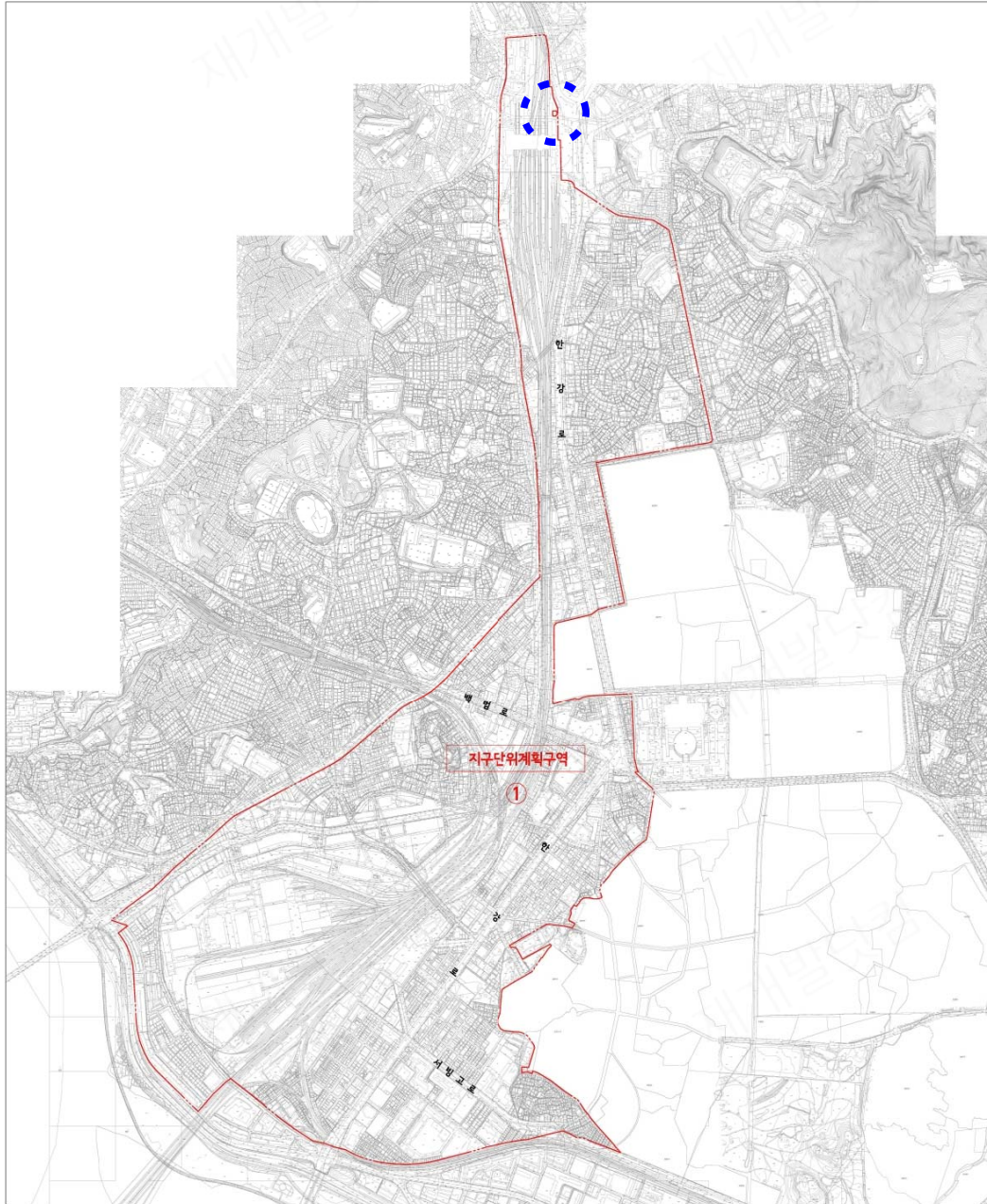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도

지구단위계획구역



0 100 200 400 800m

□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



용산 지구단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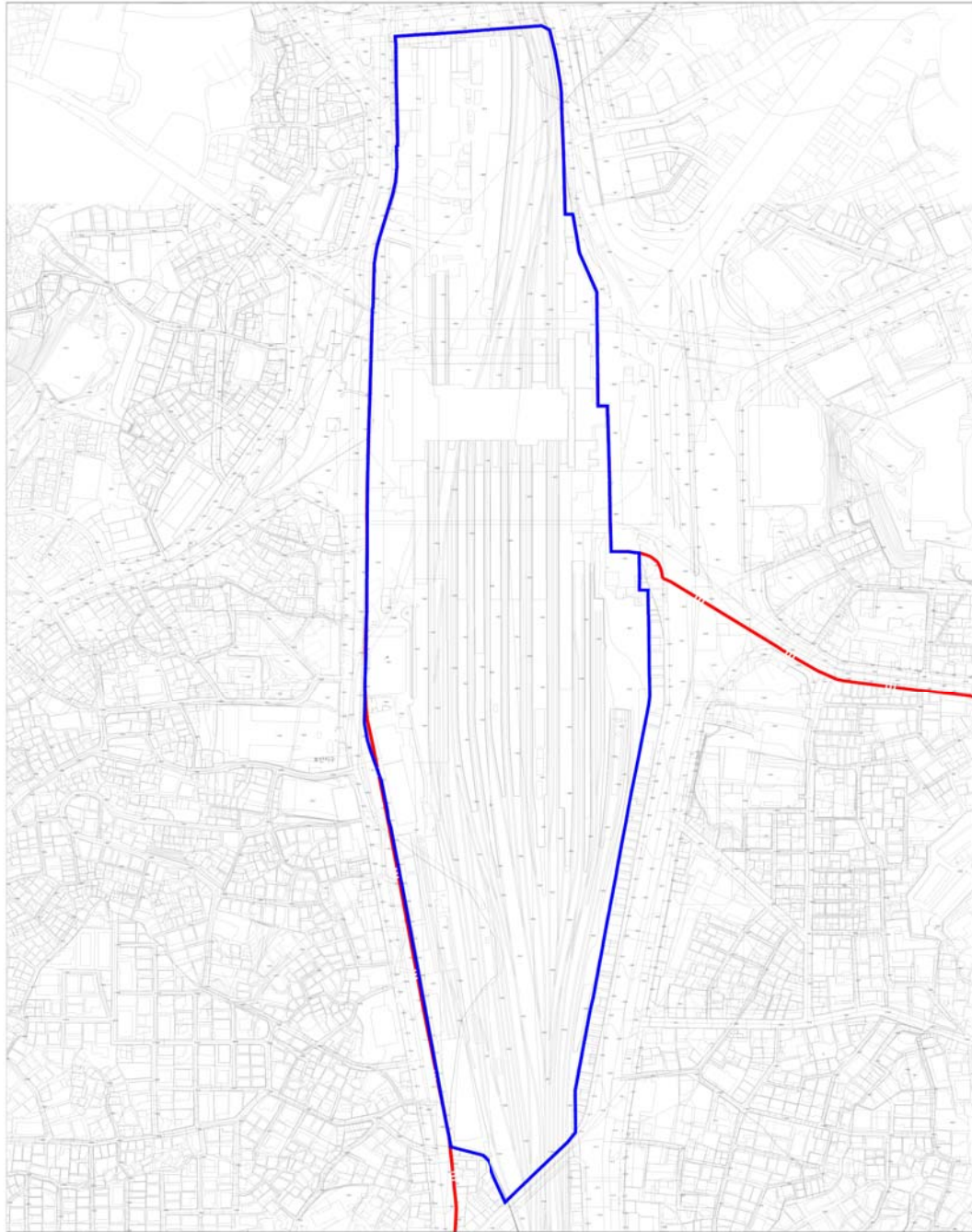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

지구단위계획구역



0 100 200 400 800m

□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)



용산 지구단위계획

특별계획구역 결정(기정)도
(서울역 역사지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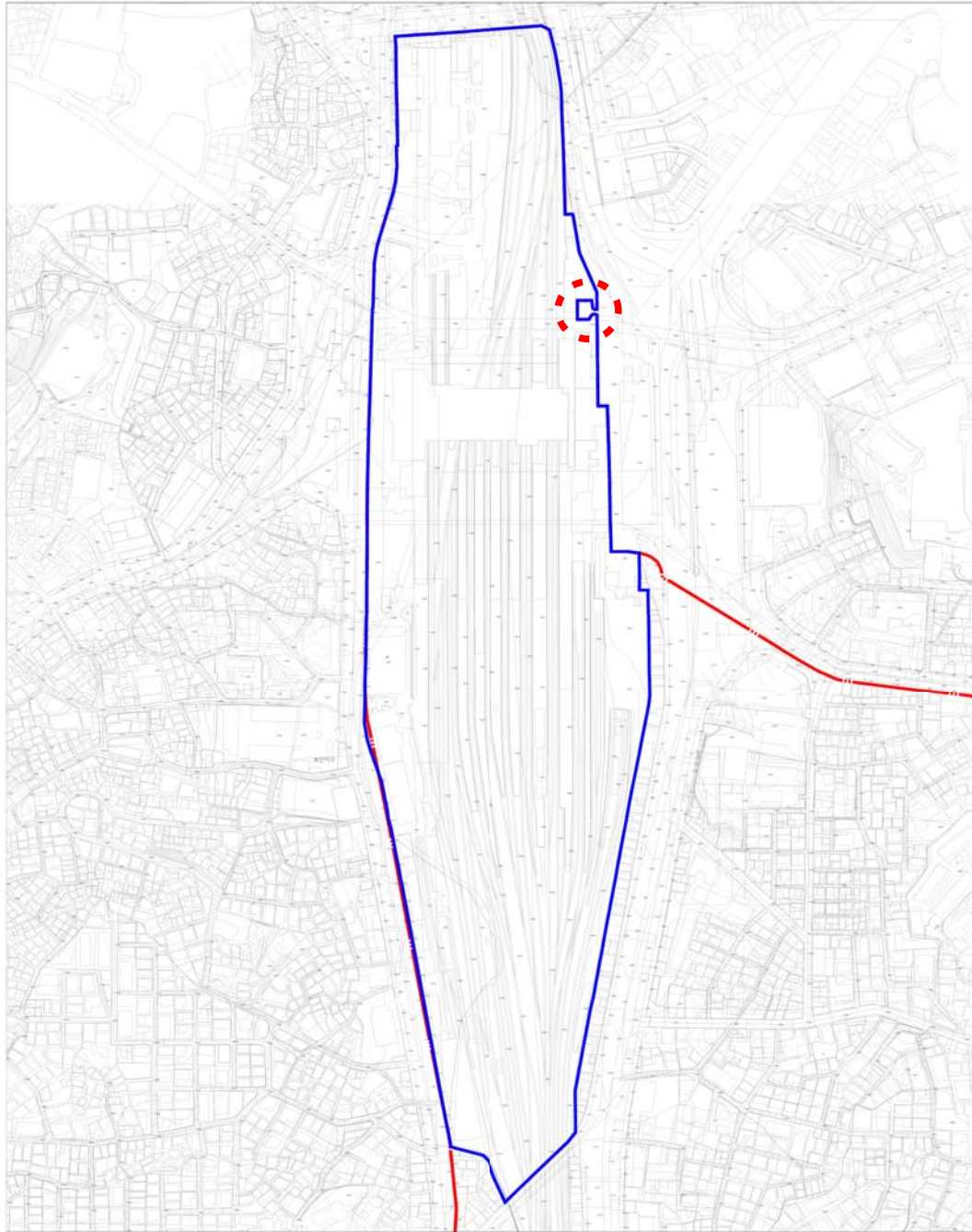
— 지구단위계획구역
— 특별계획구역

S=1:5,000

0 100 200 400 800m



□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



용산 지구단위계획

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
(서울역 역사지구)

— 지구단위계획구역
— 특별계획구역

